

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

구분	주 지원기관	기능 내용	보조 지원기관
기능 1	행정안전부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능 2	행정안전부	인명구조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3	행정안전부	이재민 수용·구호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기능 4	방송통신위원회	재해지역 통신소통 원활화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기능 5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 위생점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6	행정안전부	시설 응급 복구(장비, 인력, 자재)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산림청 등
기능 7	경찰청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기능 8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처리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9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에너지 수급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10	행정안전부	단기 지역안정(복구비, 위로금 지급)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기능 11	행정안전부	재해 수습 홍보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능 1]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업무기능			유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홍수통제소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주식회사케이티	지방해양항만청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유역환경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예방	총괄	계획 수립		●	○																																											
		정책 개발		●	○																																											
		지침 제정		●	○																																											
		표준화		●	○																																											
		시스템																																														
		시스템 개발		●	○																																											
		시스템 자원관리(하드웨어, 네트워크)		●	○																																											
		시스템 현황 조사		●	○																																											
		시스템 운영 평가		●	○																																											
		시스템 개선		●	○																																											
대비	교육훈련																																															
		전문지식 교육		●	○					○																																						
		기술 지원		●	○																																											
		훈련 지원		●	○																																											
		사전배치																																														
		인력 배치		●	○																																											
		장비 배치		●	○																																											
		사전활동																																														
		피해예상지역 위험정보 수집		●	○	○	○					○	○		○	○			○	○	○	○		○																								
		대응	계획 수립																																													
정보교류시스템 확인 및 재설정				●	○	○	○	○				○	○		○	○			○	○	○	○		○																								
재난전개 상황 파악				●	○	○	○	○				○	○		○	○			○	○	○	○		○																								
재난대응 상황 파악				●	○	○	○	○				○	○		○	○			○	○	○	○		○																								
재난피해 상황 파악				●	○	○	○	○				○	○		○	○			○	○	○	○		○																								
		자원준비 상황 파악		●	○	○	○	○			○	○		○	○			○	○	○	○		○																									
		대응계획 수립 지원		●	○	○	○	○			○	○		○	○			○	○	○	○		○																									
		대응계획 수립 지원		●	○	○	○	○			○	○		○	○			○	○	○	○		○																									
		해외재난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																																												
		대응활동																																														
자원할당을 위한 지원				●	○																																											
기관 간 정보교류시스템 가동 및 전파				●	○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파견				●	○																																											
비상지원본부 설치				●	○																																											
	평가	예산, 행정계획 수립 지원		●	○																																											
		정보분석팀 활동 지원		●	○																																											
		정보탐 및 자원동원 해제		●																																												
		지원기능활동 평가		●	○																																											
		보고서 작성		●	○																																											

비고

1. “서울교통공사 등”이란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코레일공항공철도주식회사,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능 2] 인명구조

[illegible]

[기능 3] 이재민 수용·구호

[illegible]

[기능 4] 재해지역 통신소통 원활화

[illegible]

[기능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 위생점검

[illegible]

[기능 6] 시설 응급복구(장비·인력·자재)

[illegible]

[기능 7]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illegible]

[기능 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처리

[illegible]

[기능 9] 긴급에너지 수급

[illegible]

[기능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 위로금 지급)

[illegible]

[기능 11] 재해 수습 홍보

[illegible]